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576호 2023. 5. 2.(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722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66호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 ····· 13

고성군 고시 제2023-67호 대독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34

회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3-762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

고 성 군 수

1. 개정 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범위 정비: 5개 위원회 초과 불가→3개 위원회 초과 불가(안 제3조의2)

나.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안 제7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41조)

라. 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조성 및 사용 기준 신설(안 제4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건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건축개발과 건축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2) 전화: (055)670-2743, 팩스: (055) 670-219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건축담당〔전화:(055)670-27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 5 및 별표1 제4호 거목”을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0.5미터이상”을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5개”를 “3개”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4.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에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건축물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7.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다중생활시설 기준) 영 제3조의 5 및 별표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가능한 유효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제2조의2(다중생활시설 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 1. (현행과 같음) 2. ---------- 0.5미터 이상----------.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 ⑤ (생 략) ⑥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3개----------.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제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예치방법 :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수납·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
<신 설>	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대지의 조경) ① ~ ④ (생략)	제12조(대지의 조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t신설 2016.11.10. 조2301>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 7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 3퍼센트 이상	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신 설>	제41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4.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5.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2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에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비용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건축물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7.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고시 제2023-66호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고성군고시 제2009-36호(2009.04.17.)로 최초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고성군고시 제2022-203호(2022.11.24.)로 최종 변경 승인된 대독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 5. 2.

고 성 군 수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대독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필요성 및 변경사유

■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007년07월 조선산업특구로 지정, 조선산업이 지역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 조선산업 발전을 통하여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단지계획(변경) 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산업시설용지 중 제조시설용지로 계획된 용지에 물류업을 중복 배치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 (사업시행자 변경)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를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시행자 사이에 입주기업체 배치계획 협의, 조정.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 면 적: 265,987.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승인일 ~ 2023.12.31

■ 개발방법(변경없음): 민간개발 (실수요자 직접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변경)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추가

■ 제한업종: 해당없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가. 당 초

■ 시행자_1

□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 성 명: ㈜연호 대표이사 조창래

■ 시행자_2

□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58-1번지

□ 성 명: ㈜동진테크윈 대표이사 조승민

■ 시행자_3

□ 주 소: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371번길 55

□ 성 명: ㈜비와이 대표이사 강동훈

■ 시행자_4

□ 주 소: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3길 19 (오식도동)

□ 성 명: ㈜케이에이치이 대표이사 이호준

■ 시행자_5

□ 주 소: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46

□ 성 명: 주식회사 태창이엔지 (대표이사 곽태영)

나. 변 경

■ 시행자_1

□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 성 명: ㈜연호 대표이사 조창래

■ 시행자_2

□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58-1번지

□ 성 명: ㈜동진테크윈 대표이사 조승민

■ 시행자_3

□ 주 소: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371번길 55

□ 성 명: ㈜비와이 대표이사 강동훈

■ 시행자_4

□ 주 소: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46

□ 성 명: 주식회사 태창이엔지 (대표이사 곽태영)

※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를 시행자에서 제외.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장	차	잡	공	유	수	도
필지수(필)	17	10	1	1	2	1	1	1
면 적(㎡)	265,987.3	171,611.9	7,284.1	1,000.0	52,869.7	1,059.0	903.0	31,259.6
구성비(%)	100.0	64.5	2.7	0.4	19.9	0.4	0.3	11.8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공유지(고성군)	사유지
필지수(필)	17	6	11
면 적(㎡)	265,987.3	93,375.4	172,611.9
구성비(%)	100.0	35.1	64.9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설 별	용 도 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합 계		265,987.3	-	265,987.3	100.0	
산업시설용지	제조시설	156,251.6	감)95,622.9	60,628.7	22.8	
	제조·물류시설	0.0	95,622.9	95,622.9	35.9	
	소 계	156,251.6		156,251.6	58.7	
지원시설용지	공공·생산지원·후생복지	1,033.0	-	1,033.0	0.4	
공공시설용지	도 로	43,644.8	-	43,644.8	16.4	
	주차장	7,574.8	-	7,574.8	2.8	
	오수처리시설	1,000.0	-	1,000.0	0.3	
	저류지	1,059.0	-	1,059.0	0.4	
	배수지	1,659.0	-	1,659.0	0.6	
	변전시설	282.0	-	282.0	0.1	
	소공원	613.4	-	613.4	0.2	
	녹 지 용 지	52,869.7	-	52,869.7	19.9	
	소 계	108,702.7	-	108,702.7	40.9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 중 제조시설용지로 계획된 용지에 물류업을 중복 배치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도별 세분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 계획

가) 도로 계획 총괄표

등급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당초	3	1,848	43,644.8	1	192	2,213.0	2	1,656	41,431.8	-	-	-
대로	당초	-	-	-	-	-	-	-	-	-	-	-	-
중로	당초	2	1,656	41,431.8	-	-	-	2	1,656	41,431.8	-	-	-
소로	당초	1	192	2,213.0	1	192	2,213.0	-	-	-	-	-	-

나) 세부 도로 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중로	2	1	15~18	국지도로	1,040	삼산면 판곡리 산2-2	고성읍 대독리 483	일반도로	-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당초	중로	2	2	15~18	국지도로	616	고성읍 대독리 34-1 (중로2-1)	고성읍 대독리 34-1 (중로2-1)	일반도로	-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당초	소로	1	1	10	국지도로	192	고성읍 대독리 33-6	고성읍 대독리 33-7 (중로2-2)	일반도로	-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2) 주차장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 초	1	주차장	고성읍 대독리 33-4번지 일원	7,574.8	-	7,574.8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3) 유수지 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초	1	유수지	고성읍 대독리 33-5	1,059.0	-	1,059.0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4) 녹지 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합 계					52,869.7	-	52,869.7		
당초	1	녹지	완충녹지	고성읍 대독리 35-1	37,863.8	-	37,863.8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당초	2	녹지	완충녹지	고성읍 대독리 35-2	15,005.9	-	15,005.9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5) 공원 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 초	1	공원	소공원	고성읍 대독리 33-10	613.4	-	613.4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6) 수도공급설비 계획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계획급수량
				당 초	변 경	변경후		배수지용량
당 초	1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고성읍 대독리 33-3	1,659.0	-	1,659.0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40.0㎥/일
								200.0㎥

7) 전기공급설비 계획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 초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고성읍 대독리 33-8	282.0	-	282.0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8) 수질오염방지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계획우수량
					당 초	변 경	변경후		처리시설용량
당 초	1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 설	고성읍 대독리 33-6	1,000.0	-	1,000.0	非 군계획시설	35.0㎥/일
									85.0㎥/일

9.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15.05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1) 재원조달계획

구 분	조 달 방 법	비 고
총사업비	○사업시행자의 자기자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2) 연차별 투자계획

공 종	수 량	단위	금 액 (천원)	연차별 투자계획 (천원)		비 고
				2023년	합 계	
합 계			1,505,000	1,505,000	1,505,000	
1. 토 공	1,240.0	㎥	7,048	7,048	7,048	
2. 우 수 공	1.0	식	148,269	148,269	148,269	
3. 오 수 공	599.0	m	1,682	1,682	1,682	
4. 상수도공	522.0	m	7,203	7,203	7,203	
5. 포 장 공	1.0	식	261,758	261,758	261,758	
6. 소 공 원	1.0	식	6,484	6,484	6,484	
7. 부 대 공	1.0	식	57,987	57,987	57,987	
8. 직접자재대	1.0	식	1,014,569	1,014,569	1,014,569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변경없음 ([붙임 1] 참조)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당 초

획 지 번 호	유치업종 배치계획	면 적(㎡)	구성비(%)	비 고
산업시설용지 합계		156,251.6	100.0	
BL1-1, BL1-2, BL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52,797.9	33.8	
BL2-2, BL3-1, BL3-2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103,453.7	66.2	

■ 변 경

획 지 번 호	유치업종 배치계획	면 적(㎡)	구성비(%)	비 고
산업시설용지 합계		156,251.6	100.0	
BL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26,446.3	16.9	
BL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34,182.4	21.9	
BL1-2, BL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26,351.6	16.9	
B3-1, BL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69,271.3	44.3	

※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 중 제조시설용지로 계획된 용지에 물류업을 중복배치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나. 입주기업체 배치계획 (변경)

획지번호	입주기업체		면 적(㎡)		구성비 (%)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산업시설용지 합계			156,251.6	156,251.6	100.0	
BL1-1	㈜태창이엔지	㈜태창이엔지	26,446.3	26,446.3	16.9	
BL1-2	㈜연호	㈜비와이	21,440.9	21,440.9	13.7	- 연호→비와이
BL2-2	㈜동진테크윈	㈜동진테크윈	34,182.4	34,182.4	21.9	
BL3-1	㈜비와이	㈜연호	28,410.3	28,410.3	18.2	- 비와이→연호
BL3-2	㈜케이에이치이	㈜연호	40,861.0	40,861.0	26.2	- KHE 입주 포기 - KHE→연호
BL4	㈜연호	㈜연호	4,910.7	4,910.7	3.1	

※변경사유: 실수요자로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기업체 중 입주능력이 부족한 기업체를 시행자에서 제외하고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입주(예정)기업체를 해당 산업시설용지에 추가로 배치.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 시 행 자: 고성군수

■ 시설개요: 기 준공

시 설 명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m)	주 요 경과지	비 고
		시 점	종 점			
농어촌도로	병판선 (농도: 삼산304호)	삼산면 판곡리 365-89	고성읍 대독리 29-8	370	삼산면 판곡리	진입 도로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서 (변경없음)

가. 토 지 (변경없음)

■ 고성군 무상귀속: 107,420.7㎡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40.4%)

■ 사업시행자 귀속: 158,566.6㎡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9.6%)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합 계	265,987.3	-	265,987.3	100.0		
산업시설용지	156,251.6	-	156,251.6	58.7	시행자 귀속	
지원시설용지	1,033.0	-	1,033.0	0.4	시행자 귀속	
공공시설용지	108,702.7	-	108,702.7	40.9		
도 로	43,644.8	-	43,644.8	16.4	고성군 귀속	
주차장	7,574.8	-	7,574.8	2.8	고성군 귀속	
오수처리시설	1,000.0	-	1,000.0	0.4	시행자 귀속	
저류지	1,059.0	-	1,059.0	0.5	고성군 귀속	
배수지	1,659.0	-	1,659.0	0.6	고성군 귀속	
변전시설	282.0	-	282.0	0.1	시행자 귀속	
소공원	613.4	-	613.4	0.2	고성군 귀속	
녹 지	52,869.7	-	52,869.7	19.9	고성군 귀속	

나. 시설물 (변경없음)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진입도로	사 면	1	식	고성군 귀속	
		생태축 연결구간 터널설치	16.0×8.0m	L=30.0m	고성군 귀속	
	단지내도로 L형 측구 설치		-	L=1,848m	고성군 귀속	
상수	송수관로		1조(D=80mm)	L=1,252m	고성군 귀속	
	배수지		1식	Q=200ton	고성군 귀속	
우수	수 로 관		800B = 450.0m 300C = 840.0m	L=1,290m	고성군 귀속	
	원형우수관		D=600mm	L=2,538.0m	고성군 귀속	
	산마루측구		0.3×0.3m	L=170m	고성군 귀속	
	집 수 정		-	29 개소	고성군 귀속	
	저류지유출관		D1,200mm=347.0m 수로관1.5x1.2=170.0m	L=388m	고성군 귀속	
구조물	L형옹벽측구		H=1.8m	L=320m	고성군 귀속	
	보강토옹벽		캡 형 = 49.2㎡ 표준형 = 3230.0㎡	L=393.4m	고성군 귀속	
오수	오수처리장		분리조를 이용한 질소인 제거 방법 + 여과법	Q=85㎥/일	시행자 귀속	
부대	가로수		각종 수목	601주	고성군 귀속	
전기	가로등		H=7.0m	28주	고성군 귀속	

14.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65,987.3	-	265,987.3	100.0	
일반공업지역	213,117.6	-	213,117.6	80.1	
자연녹지지역	52,869.7	-	52,869.7	19.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대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일원	265,987.3	-	265,987.3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65,987.3	-	265,987.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56,251.6	-	156,251.6	58.7	
지 원 시 설 용 지		1,033.0	-	1,033.0	0.4	
공 공 시 설 용 지		55,833.0	-	55,833.0	21.0	
	도 로	43,644.8	-	43,644.8	16.4	
	주 차 장	7,574.8	-	7,574.8	2.9	
	오 수 처 리 시 설	1,000.0	-	1,000.0	0.4	
	저 류 지	1,059.0	-	1,059.0	0.4	
	배 수 지	1,659.0	-	1,659.0	0.6	
	변 전 시 설	282.0	-	282.0	0.1	
	소 공 원	613.4	-	613.4	0.2	
녹 지 용 지		52,869.7	-	52,869.7	19.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 도로계획 총괄표

등급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	1,848	43,644.8	1	192	2,213.0	2	1,656	41,431.8	-	-	-
대로	기정	-	-	-	-	-	-	-	-	-	-	-	-
중로	기정	2	1,656	41,431.8	-	-	-	2	1,656	41,431.8	-	-	-
소로	기정	1	192	2,213.0	1	192	2,213.0	-	-	-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18	국지도로	1,040	삼산면 판곡리 산2-2	고성읍 대독리 483	일반도로	-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기정	중로	2	2	15~18	국지도로	616	고성읍 대독리 34-1 (중로2-1)	고성읍 대독리 34-1 (중로2-1)	일반도로	-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92	고성읍 대독리 33-6	고성읍 대독리 33-7 (중로2-2)	일반도로	-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나)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고성읍 대독리 33-4번지 일원	7,574.8	-	7,574.8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다)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2,869.7	-	52,869.7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고성읍 대독리 35-1 번지일원	37,863.8	-	37,863.8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고성읍 대독리 35-2번지 일원	15,005.9	-	15,005.9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라)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대독산 단공원	소공원	고성읍 대독리 33-10번지 일원	613.4	-	613.4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마)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고성읍 대독리 33-5번지 일원	1,059.0	-	1,059.0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바)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고성읍 대독리 33-3	1,659.0	-	1,659.0	2009.04.17. (고성군 고시 제2009-36호)	

사)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고성읍 대독리 33-8	282.0	-	282.0	2012.05.11. (고성군 고시 제2012-70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면 적 (㎡)		
		기 정	변 경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합 계		157,284.6	157,284.6			157,284.6	157,284.6	
-	BL1	47,887.2	47,887.2	1	고성읍 대독리 33-2	26,446.3	26,446.3	산업시설용지
				2	고성읍 대독리 33-14	21,440.9	21,440.9	산업시설용지
	BL2	35,215.4	35,215.4	1	고성읍 대독리 33-8	1,032.0	1,033.0	지원시설용지
				2	고성읍 대독리 33-9	34,182.4	34,182.4	산업시설용지
	BL3	69,271.3	69,271.3	1	고성읍 대독리 33-12	28,410.3	28,410.3	산업시설용지
				2	고성읍 대독리 33-13	40,861.0	40,861.0	산업시설용지
	BL4	4,910.7	4,910.7	0	고성읍 대독리 33-1	4,910.7	4,910.7	산업시설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산업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1 BL1-2 BL4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관리사무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한함)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불허용도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0m 이하 (4층 이하)
			최저한도	-
		기 타		• 공장건축 시 「고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10% 이상 확보
-	BL2-2 BL3-1 BL3-2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관리사무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한함)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불허용도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0m 이하 (4층 이하)
			최저한도	-
		기 타		• 공장건축 시 「고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10% 이상 확보

□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1-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관리사무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한함)
			권장용도	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불허용도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0m 이하 (4층 이하)
			최저한도		-
		기 타			• 공장건축 시 「고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10% 이상 확보
-	BL2-2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관리사무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한함)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불허용도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0m 이하 (4층 이하)
			최저한도		-
		기 타			• 공장건축 시 「고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10% 이상 확보
	BL1-2 BL4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관리사무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권장용도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불허용도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0m 이하 (4층 이하)
			최저한도		-
		기 타			• 공장건축 시 「고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10% 이상 확보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3-1.BL3-2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관리사무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권장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불허용도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0m 이하 (4층 이하)
			최저한도	-
		기 타		• 공장건축 시 「고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10% 이상 확보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 중 제조시설용지로 계획된 용지에 물류업을 중복 배치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2-1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의 일반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더목 및 러목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30m 이하 (4층 이하)
			최저한도	
		기타		-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생략)

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합 계			613.0	-	-	
공 원 시 설			101.0	-	-	시설률 : 16.5%
광 장		진입광장	33.0	-	-	2EA
		쉼 터	50.0	-	-	1EA
		소 계	83.0	-	-	-
휴양시설		휴게시설 (긴의자)	18.0	-	-	2EA
		소 계	18.0	-	-	-
녹 지			512.0	-	-	녹지율 : 83.5%

15. 대독일반산업단지 지정 구역계 좌표조서 (변경없음)

NO.	X 좌표	Y 좌표	NO.	X 좌표	Y 좌표
1	136457.4460	163465.6780	45	137107.0450	162890.4610
2	136457.3660	163465.4100	46	137118.5040	162915.0450
3	136457.4790	163464.4460	47	137125.6440	162919.0300
4	136447.9660	163456.5630	48	137094.6410	162938.5630
5	136442.1870	163454.9620	49	137058.9410	162961.0470
6	136422.9350	163454.9560	50	137052.2700	162968.7990
7	136418.1810	163452.8510	51	137031.5529	162993.3925
8	136417.3220	163439.5440	52	137015.7380	163087.2980
9	136417.1210	163435.2120	53	136982.7740	163246.7900
10	136418.1440	163412.2540	54	136975.4180	163284.8530
11	136414.6160	163403.2600	55	136919.0150	163345.3250
12	136415.2010	163388.7890	56	136905.4980	163367.2830
13	136416.2420	163382.3330	57	136903.5070	163369.6420
14	136414.5020	163364.2370	58	136898.0550	163375.2160
15	136416.2780	163359.5590	59	136897.9080	163378.2020
16	136416.8160	163358.1430	60	136894.5740	163379.7800
17	136418.1200	163346.7340	61	136871.9980	163390.5320
18	136418.4270	163338.4570	62	136865.7870	163394.0340
19	136420.1410	163331.1430	63	136863.1240	163395.6110
20	136420.1410	163182.9401	64	136846.4420	163405.4920
21	136433.1030	163142.1610	65	136842.1920	163405.9010
22	136425.9390	163109.3170	66	136836.4880	163401.1910
23	136424.9240	163106.2660	67	136836.6020	163397.7470
24	136424.8320	162929.2700	68	136824.3320	163387.7250
25	136561.1460	162929.2850	69	136818.9140	163385.1240
26	136562.8350	162931.1130	70	136813.4240	163379.4080
27	136565.5679	162931.9810	71	136813.9520	163378.0450
28	136701.9160	162958.9300	72	136729.9840	163384.3530
29	136794.4850	162988.4740	73	136682.4410	163383.0040
30	136841.4060	162958.5430	74	136682.0880	163371.1430
31	136871.3170	162937.5940	75	136681.9900	163367.8690
32	136888.3840	162926.1540	76	136540.1010	163366.4880
33	136905.8720	162915.2070	77	136524.8910	163366.1580

NO.	X 좌표	Y 좌표	NO.	X 좌표	Y 좌표
34	136912.6360	162910.9730	78	136513.0320	163365.9010
35	136953.4530	162886.4420	79	136513.0319	163365.9009
36	136955.3580	162885.2970	80	136510.7280	163365.8510
37	136982.6660	162879.6660	81	136511.3480	163367.6650
38	137000.0000	162876.0910	82	136512.5851	163369.5849
39	137057.1190	162861.8650	83	136503.9931	163383.1679
40	137076.3530	162848.8920	84	136469.2070	163446.3210
41	137079.0260	162847.0260	85	136461.3350	163460.6050
42	137084.8840	162842.9360	86	136459.1642	163463.4368
43	137086.1640	162845.6800	87	136459.1640	163463.4360
44	137102.7500	162881.2500	88	136457.4460	163465.6780

■ 군계획시설사업(대독일반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소공원)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고성군계획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대독일반산업단지 내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설치 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도 로: 12,385.2㎡

□ 중로2-1호선: 폭 15~18m, 길이 140m, 면적 337.8㎡

□ 중로2-2호선: 폭 15~18m, 길이 616m, 면적 9,834.4㎡

□ 소로1-1호선: 폭 10m, 길이 192m, 면적 2,213.0㎡

■ 주차장: 7,574.8㎡

■ 공원(소공원): 613.4㎡

■ 수도공급설비: 1,659.0㎡

■ 전기공급설비: 28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가. 당 초

■ 시행자_1

□ 성 명: ㈜연호 대표이사 조창래

□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 시행자_2

□ 성 명: ㈜동진테크윈 대표이사 조승민

□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58-1번지

■ 시행자_3

□ 성 명: ㈜비와이 대표이사 강동훈

□ 주 소: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371번길 55

■ 시행자_4

□ 성 명: ㈜케이에이치이 대표이사 이호준

□ 주 소: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3길 19 (오식도동)

■ 시행자_5

□ 성 명: 주식회사 태창이엔지 (대표이사 곽태영)

□ 주 소: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46

나. 변 경

■ 시행자_1

□ 주 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 성 명: ㈜연호 대표이사 조창래

■ 시행자_2

□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58-1번지

□ 성 명: ㈜동진테크윈 대표이사 조승민

■ 시행자_3

□ 주 소: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371번길 55

□ 성 명: ㈜비와이 대표이사 강동훈

■ 시행자_4

□ 주 소: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46

□ 성 명: 주식회사 태창이엔지 (대표이사 곽태영)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2012.05.11. ~ 2023.12.31.

6. 자금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변경없음): 기 준공분 제외

■ 총사업비: 15.05억원

나. 자금조달계획 (변경없음)

1) 자금조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조 달 방 법	비 고
총사업비	○사업시행자의 자기자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2)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공 종	수 량	단위	금 액 (천원)	연차별 투자계획 (천원)		비 고
				2023년	합 계	
합 계			1,505,000	1,505,000	1,505,000	
1. 토 공	1,240.0	㎥	7,048	7,048	7,048	
2. 우 수 공	1.0	식	148,269	148,269	148,269	
3. 오 수 공	599.0	m	1,682	1,682	1,682	
4. 상수도공	522.0	m	7,203	7,203	7,203	
5. 포 장 공	1.0	식	261,758	261,758	261,758	
6. 소 공 원	1.0	식	6,484	6,484	6,484	
7. 부 대 공	1.0	식	57,987	57,987	57,987	
8. 직접자재대	1.0	식	1,014,569	1,014,569	1,014,56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붙임] 참조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고성군청(경제기업과: 055-670-2344)에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 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동	리					주소	성명	
합 계					265,987.3	265,987.3			
1	고성	대독	33-1	장	4,910.7	4,910.7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산업시설
2	〃	〃	33-2	장	26,446.3	26,446.3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산업시설
3	〃	〃	33-3	수	903.0	903.0	공	고성군	- 수도공급설비
4	〃	〃	33-4	차	7,284.1	7,284.1	공	고성군	- 주차장, 중2-1
5	〃	〃	33-5	유	1,059.0	1,059.0	공	고성군	- 저류지
6	〃	〃	33-6	잡	1,000.0	1,000.0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오수처리시설
7	〃	〃	33-7	장	12,047.4	12,047.4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중2-2, 소1-1
8	〃	〃	33-8	장	2,071.0	2,071.0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지원시설, 전기공급설비
9	〃	〃	33-9	장	34,182.4	34,182.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58-1	(주)동진테크윈	- 산업시설
10	〃	〃	33-10	장	613.4	613.4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소공원
11	〃	〃	33-11	장	628.5	628.5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주차장, 중2-1
12	〃	〃	33-12	장	28,410.3	28,410.3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산업시설
13	〃	〃	33-13	장	40,861.0	40,861.0	고성읍 대독리 산78-6	㈜연호	- 산업시설
14	〃	〃	33-14	장	21,440.9	21,440.9	고성읍 대독리 산78-6	㈜비와이 외1인	- 33-2에서 분할(산업시설)
15	〃	〃	34-1	도	31,259.6	31,259.6	공	고성군	- 중로2-1
16	〃	〃	35-1	공	37,863.8	37,863.8	공	고성군	- 녹지
17	〃	〃	34-2	공	15,005.9	15,005.9	공	고성군	- 녹지

고성군고시 제2023-67호

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성「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 5. 2.

고 성 군 수

변경사유

■ 입주허용 업종 (변경)

□ 입주 지연 중인 대독일반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물류창고업의 입주 허용.

■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계획 (변경)

□ 산업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 공장시설용도/공장·물류시설용도로 분류

■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변경)

□ 산업시설구역 중 공장·물류시설용도에 물류창고업 중복배치

□

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뒤쪽의 「고성 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서」 참조

「고성 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서」

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명 칭 : 경상남도 고성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3-2번지 일원

■ 면 적 : 265,987.3㎡

3. 추진경위

□ 2009.04.17.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성군고시 제2009-36호)

□ 2009.09.24.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성군고시 제2009-89호)

□ 2010.01.27.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성군고시 제2010-5호)

□ 2010.06.23.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성군고시 제2010-57호)

□ 2010.08.24. 지정면적 변경 (고성군고시 제2010-82호)

□ 2010.09.09. 준공인가 공고 (고성군공고 제2010-617호)

□ 2012.05.11.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고성군고시 제2012-70호)

□ 2012.06.13. 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성군고시 제2012-95호)

□ 2014.03.20. 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성군고시 제2014-60호)

□ 2014.07.24.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14-117호)

□ 2015.06.18. 대독일반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고시 (고성군고시 제2015-75호)

□ 2015.07.23.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15-93호)

□ 2016.01.07.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16-1호)

□ 2017.03.09.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17-33호)

□ 2017.12.28.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17-211호)

□ 2018.12.27.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18-187호)

- ▫ 2019.11.27. 대독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성군고시 제2019-169호)
- ▫ 2020.12.24.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20-304호)
- ▫ 2021.12.29.: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21-405호)
- ▫ 2021.12.29.: 대독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성군고시 제2021-406호)
- ▫ 2022.11.24.: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22-203호)
- ▫ 2022.11.24.: 대독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22-204호)
- ▫ 2023.5.2.: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변경)승인 고시 (고성군고시 제2023-66호)

4. 분양계획

■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분양은 입주와 같은 의미.

산업단지면적 (㎡)	분양가능면적 (㎡)					조성기간	관리기관 (관리권자)	비 고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265,987.3	157,283.7	0.0	0.0	0.0	157,283.7	2009.04.~ 2023.12.	고성군수 (고성군수)	기반시설 정비공사 중

5. 입주계획

구 분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비 고
면 적 (㎡)		265,987.3	156,251.6	1,032.0	108,703.6	
입 주 기업체 (개)	당초	6	5	1	0	
	변경	5	4	1	0	

6. 입지여건

가. 입지현황 개설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의 성공적 유치로 새로운 조선·해양특화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고성군 내에 입지.

■ 주거, 교육, 문화 등 배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고성읍에 입지.

■ 일반국도33호선, 일반국도14호선, 지방도1010호선과 연계 가능.

나. 기반시설 현황

구 분	단위	시 설 규 모	사업기간	시 행 자	준공여부
진입도로	m	B = 15, L = 370	‘09. ~ ‘10.	고성군수	준 공
단지내 도로	m	3개노선, 1,848m	‘09. ~ ‘23.	㈜연호 외	부분개설
용 수	톤/일	배수지 : V=400톤	‘09. ~ ‘23.	〃	V=200톤 준공
전 력	MW	-	‘09. ~ ‘23.	한국전력공사	인입시설 완료
통신시설	회선	입주기업체 필요 회선	‘09. ~ ‘23.	한국통신	순차적 개통
오수처리장	톤/일	85	‘09. ~ ‘10.	㈜연호	준 공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가. 적용범위

■ **(적용범위)** 대독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은 대독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에 적용한다.

■ **(개별법 적용)** 공공시설용지 중 이 「관리기본계획」의 적용 범위가 아닌 구역은 개별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른다.

□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주차장)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오수처리시설) 「하수도법」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 (저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수지) 「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구 분	산업단지 총 면 적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비 고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계	
면 적 (㎡)	265,987.3	156,251.7	1,032.0	157,283.7	

다.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관리기본방향

1) 지정목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2007년 7월 조선산업특구의 성공적 유치로 조선산업이 고성군의 지역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조선산업 발전을 통하여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리기본방향

가) 목 표

□ 합리적인 공장배치 및 집적을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효과 극대화

□ 친환경적 산업단지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운영

나) 기본방향

□ 효율적인 조달물류, 생산공정과 생산물류 및 납품, 친환경적 공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플랜트엔지니어링에 입각한 공장배치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등 조선·해양산업 업체와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운영

□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후생복지 도모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

1) 입주허용 업종(변경)

■ 당 초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 변 경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추가

2) 입주 제한

□ 산업시설공간에 입주 허용 업종 중 생산 공정상 폐수발생 공정 및 시설 입주 불가

나. 입주기업체의 자격

□ **(사업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는 사업시행자에 한함

□ **(기타 기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는 등 사업시행자의 처분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입주허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체도 입주 가능

3.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계획 (변경)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1) 용도별 구역 지정 (변경)조서

가) 용도별 구역 지정 조서 (당초)

시설별 구 역	용도 세분	도 면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265,987.3	
산업시설구역		BL1-1	고성읍 대독리 33-2	26,446.3	
		BL1-2	고성읍 대독리 33-14	21,440.9	
		BL2-2	고성읍 대독리 33-9	34,182.4	
		BL3-1	고성읍 대독리 33-12	28,410.4	
		BL3-2	고성읍 대독리 33-13	40,861.0	
		BL4	고성읍 대독리 33-1	4,910.7	
	산업시설구역 계			156,251.6	
지원시설용지		BL2-1	고성읍 대독리 33-8	1,032.0	
공공시설구역		■1	고성읍 대독리 34-1 외	55,833.9	
녹지구역		1	고성읍 대독리 35-1	37,863.8	
		2	고성읍 대독리 35-2	15,005.9	
	녹지구역 계			52,869.7	

나) 용도별 구역 지정 조서 (변경)

시설별 구역	용도세분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265,987.3	
산업시설구역	공장시설용도	BL1-1	고성읍 대독리 33-2	26,446.3	
	공장·물류시설용도	BL1-2	고성읍 대독리 33-14	21,440.9	
	공장시설용도	BL2-2	고성읍 대독리 33-9	34,182.4	
	공장·물류시설용도	BL3-1	고성읍 대독리 33-12	28,410.3	
	공장·물류시설용도	BL3-2	고성읍 대독리 33-13	40,861.0	
	공장·물류시설용도	BL 4	고성읍 대독리 33-1	4,910.7	
	산업시설구역 계			156,251.6	
지원시설구역	-	BL2-1	고성읍 대독리 33-8	1,032.0	
공공시설구역	-	1	고성읍 대독리 34-1 외	55,833.9	
녹 지 구 역	-	1	고성읍 대독리 35-1	37,863.8	
	-	2	고성읍 대독리 35-2	15,005.9	
녹지구역 계				52,869.7	

다) 용도별 구역 지정 (변경) 사유서

구분	획지번호	용도 세분	면 적 (㎡)	변 경 사 유
합 계				
변경	BL1-1, BL2-1	공장시설용도		-유치업종 추가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하고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시설용도와 물류시설용도를 중복지정.
	BL1-2, BL3-1, BL3-2, BL4	공장·물류시설용도		

2) 용도별 구역 지정도 (변경) : [붙임 1]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시설물)의 범위 (변경)

1) 산업시설구역 (변경)

□ **(허용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허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추가

- **(제한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정 도입 및 시설 설치 불가

2)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 **(허용 건축물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한사항)**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공장, 장례식장 설치 불가

4.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변경)

가. 배치기준

□ 산업집적에 따른 외부효과(외부경제성)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

□ 제조를 위한 조달·생산·판매(납품)물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공학(Plant Engineering)에 따른 배치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주요 유치업종 중복배치

□ 산업단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나.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변경)

1)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조서 (변경)

획지번호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면 적(㎡)	구성비(%)	비 고
산업시설용지 합계		156,251.6	100.0	
BL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26,446.3	16.9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정 도입 및 시설 설치 불가
BL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34,182.4	21.9	
BL1-2, BL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26,351.6	16.9	
B3-1, BL3-2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69,271.3	44.3	

※ 변경사유: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하고, BL1-2, BL3-1~2, BL4에 물류업을 중복배치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2)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변경) : [붙임 2]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가. 설치할 지원시설의 종류

□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종류

- 공공지원시설
- 생산지원시설
- 후생복지지원시설

□ 구역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 「대독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나.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

□ 설치·운영 주체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

6. 기타 계획

가. 산업용지의 관리

□ **(관리원칙)**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산업용지의 관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 **(처분제한)** 산업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

□ **(처분제한 예외)**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 외의 부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 **(최소분할면적 예외)**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 해 용지 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입주계약 해지할 수 있다.

나.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 입주기업체는 공장 등을 각종 환경기준을 정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후 환경관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설치는 사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업종 제한사항 완화)**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상 제한사항의 완화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체의 사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과정에서 제한사항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입주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안전관리

□ **(법령 준수)**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 입주기업체는 업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지도·감독)**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공해·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기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입주기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후생복지

□ **(후생복지지원시설 설치)** 산업단지 내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근로자 및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지원시설 부지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지정도 (당초)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지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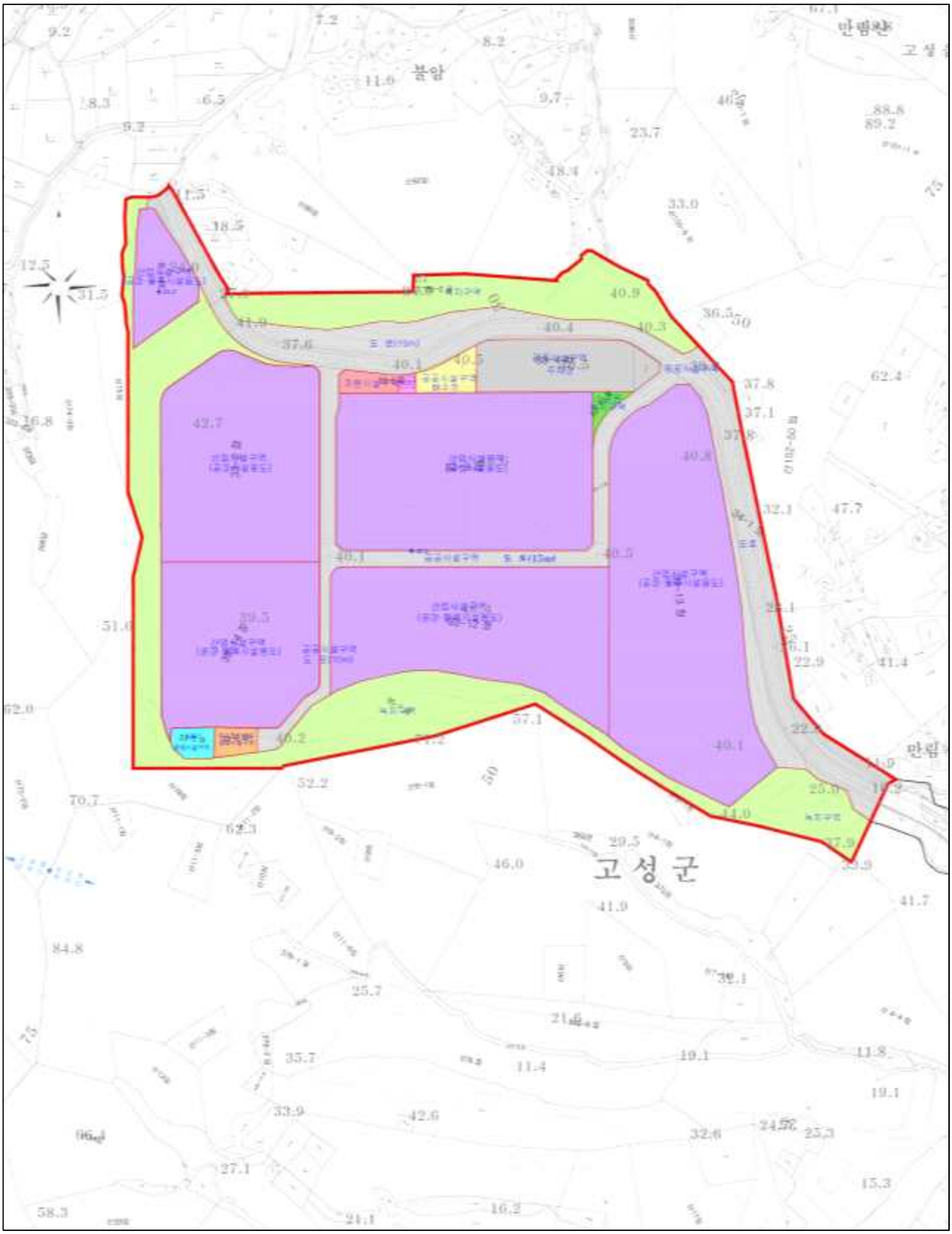

[붙임 2]

대독일반산업단지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 (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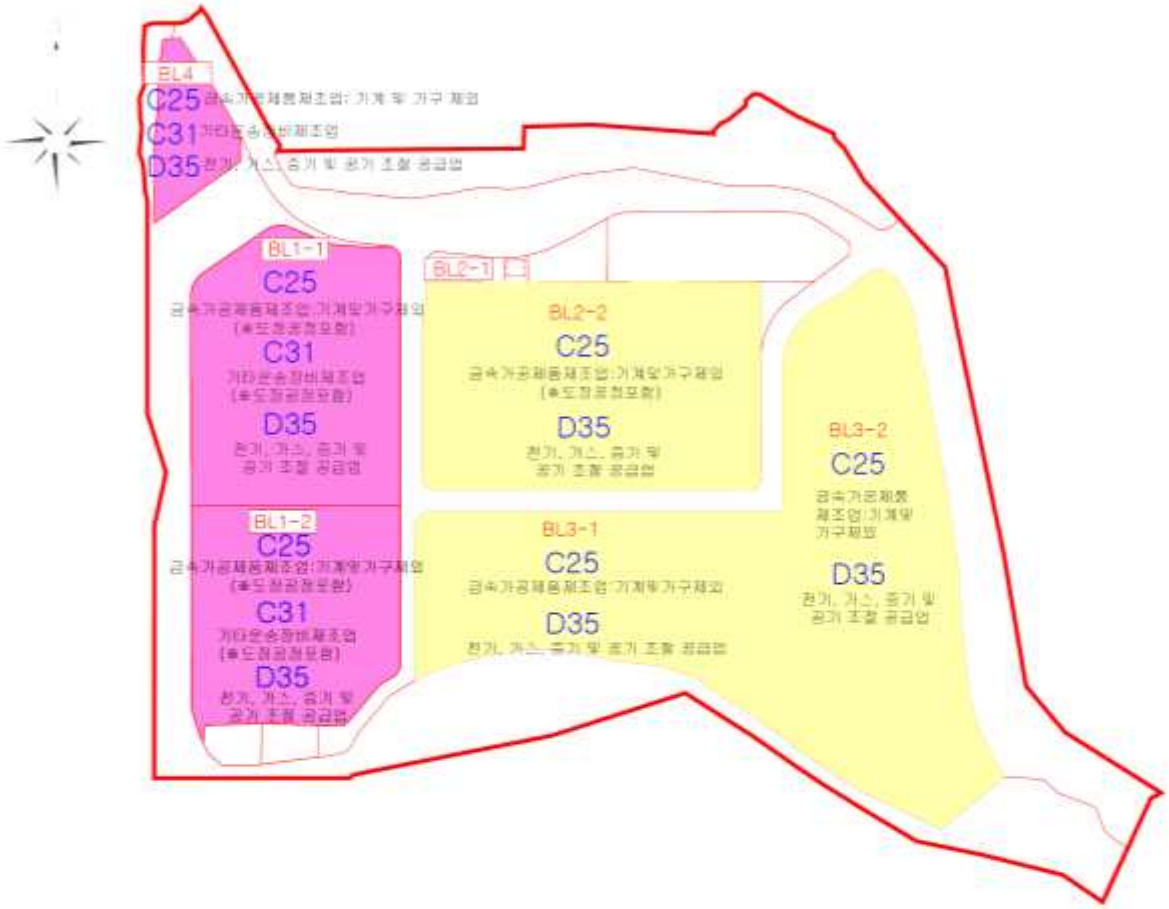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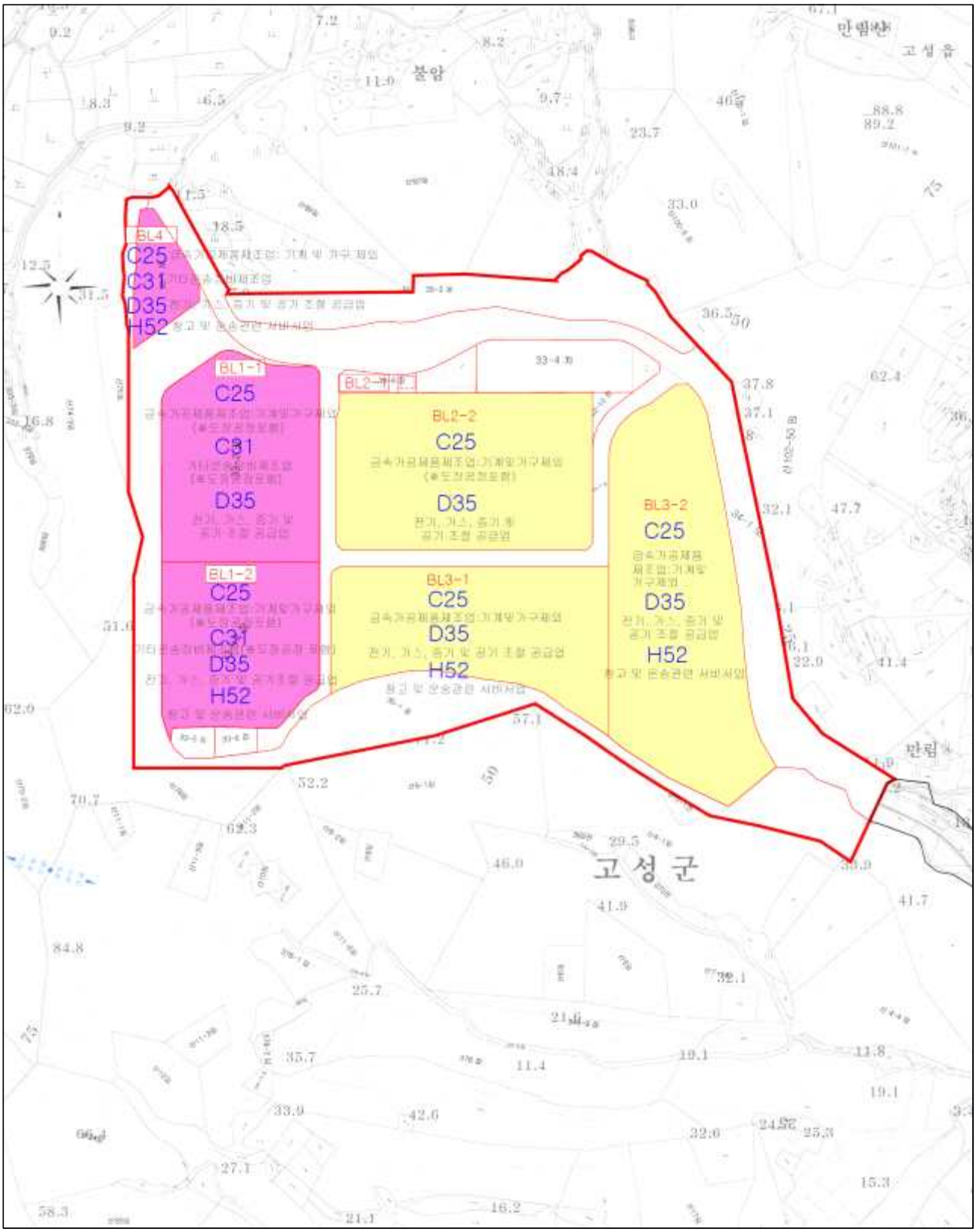
대독일반산업단지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도 (변경)